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3.(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1년 11월 9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0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12월 19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성수)

### 가. 제안이유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신규위임 사무 반영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조문개정

- 남부출장소 신설 (안 제1조, 제2조, 제5조)

◆ 별표개정

- 권한위임 사무 신설 : 1건 <별표 4>
  -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권 (총무과)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2건 <별표 1>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변경(관광항공과) : 시도 → 시군 (사무이양)
  - 삭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균형개발과)
    - 삭도 : 도시계획 시설에서 제외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등 변경 : 5건 <별표1>
  - 근거법령 개정 : 4건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과태료 부과 징수 (2건)
    -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및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2건)
    - ※ 자동차저당법(폐지), 건설기계저당법(폐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부서명칭 변경 : 1건
    - 사회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금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남부출장소를 신설하고,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신설하며,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하고,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

금번 조례안은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신규위임 사무 반영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에게”를 “내수면연구소장,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에게”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에게”를 “내수면연구소장,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에게”로 한다.

제5조 중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은”을 “내수면연구소장,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은”으로 한다.

별표 1중 “사회복지정책과, 원예유통식품과, 관광항공과, 균형개발과, 교통물류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복지정책과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운용 및 시설업무의 지도·감독 등</li> <li>·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li> <li>· 재해구호에 대한 다음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용시설의 제공(응급가설주택 포함)</li> <li>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li> <li>다. 의료 및 조산</li> <li>라. 이재자의 구출</li> <li>마. 이재주택의 응급수리</li> <li>바.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li> <li>사. 생업알선</li> <li>아. 장사</li> </ul> </li> </ul>	<p>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p> <p>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p> <p>재해구호법 제5조</p>
원예유통식품과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li> <li>· 과태료 부과·징수</li> </ul>	<p>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p> <p>같은법 제18조 제2항</p>
균형개발과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li> <li>·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용도지역 변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함)</li> <li>·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계획 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li> <li>나. 주차장</li> <li>다. 궤도</li> <li>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li> </ul> </li> </ul>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p> <p>같은법 제30조, 제50조</p> <p>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바.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사.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아. 공동구 자. 공공공지 차. 수도공급설비 카. 전기공급설비 타. 가스공급설비 파. 방송·통신시설 하. 시장 거. 열공급설비 너.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더.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 러.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머. 도서관 버. 문화시설 서. 연구시설 어. 사회복지시설 저. 공공직업훈련시설 처. 청소년 수련시설 커. 유수지 터. 방화설비 퍼. 저수지(댐 제외) 허. 방풍설비 고. 방수설비 노. 사방설비 도. 방조설비 로. 하수도 모. 도축장 보. 장례식장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 종합의료시설 오. 폐차장 조.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하천(소하천에 한함) 포.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구. 화장시설 누. 봉안시설 두. 자연장지 루. 공동묘지	
	4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5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제2종 지구 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법 제30조, 제49조, 제50조
	6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7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8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9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10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같은법 제88조부터 제91조
	11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법 제133조
	12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개발법 제4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3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14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포함)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도시개발법 제9조 같은법 제17조, 제18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58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제5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교통물류과	1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 이행 여부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같은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 정지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20조, 제21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 나. 조종사의 면허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 다.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28조
	3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마. 등록번호표의 반납 바. 식별근란등록번호표의 재새김 명령등 사.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수리, 지정 취소 아. 보고 및 검사 자. 과태료 부과정수, 이의신청 처리 차.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카. 매매용건설기계의 신고 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파. 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등록의 수리 하.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법 제3조, 제5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8조의2 같은법 제35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같은법 제34조의2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24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5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 금지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6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7	•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8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의 완성 라. 사용개시 마. 사용약관 인가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차. 사업개선 명령 카. 사용명령 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파. 면허의 취소 하. 과징금 처분 거. 청문 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더.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러. 정관변경 등의 명령 머. 재정지원, 조합감독 버.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협의 및 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8조제4항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제3항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53조 같은법 제54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50조, 제57조 같은법 제47조제3항, 제4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처리</li> <li>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li> <li>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li> <li>같은법 제56조</li> <li>같은법 제56조</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업의 등록</li> <li>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li> <li>다. 사업관리 위탁허가</li> <li>라. 사업개선명령</li> <li>마. 사업계획변경등록</li> <li>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li> <li>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li> <li>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li> <li>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li> <li>차. 청문</li> <li>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li> <li>타. 과태료의 부과·징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li> <li>같은법 제31조</li> <li>같은법 제32조</li> <li>같은법 제33조</li> <li>같은법 제10조제2항, 제35조</li> <li>같은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35조</li> <li>같은법 제15조제1항, 제35조</li> <li>같은법 제16조제2항, 제35조</li> <li>같은법 제85조</li> <li>같은법 제86조</li> <li>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li> <li>같은법 제94조</li> </ul>

[별표 4]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4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총무과	1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 부교수이하 임용권	충북도립 대학총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 5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자치연수 원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 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 5급 상당 지방연구관·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연구소장 및 시험장장은 제외)	농업기술 원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5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산림환경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7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농산사업 소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9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내수면 연구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1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북 부 출장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2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남 부 출장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b>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에게</b>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b>내수면연구소장,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에게</b>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권한위임사항)</b>  ④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b>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에게</b>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p>	<p><b>제2조(권한위임사항)</b>  ④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b>내수면연구소장,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에게</b>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p>
<p><b>제5조(위임처리 금지)</b>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b>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b>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처리 할 수 없다.</p>	<p><b>제5조(위임처리 금지)</b>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b>내수면연구소장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b>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처리 할 수 없다.</p>

## 관련법령 발췌

### < 공 통 >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 총무과 >

####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관광항공과 >

#### □ 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 균형개발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가도로                      바. 지하도로

## < 원예유통과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 교통물류과 >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해양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등록관청